

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

성 북 구
(자치 행정 과)

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6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변경이유

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
- 3) 설치연도 : 2023. 7. 13.
- 4) 기금의 용도
 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- 지역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-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나.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

- 1) 운용계획 변경 사유 :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(증 37,848원)
 -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 목표모금액 12,000천원보다 37,848천원 증액모금

구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32,381천원	70,229천원	37,848천원

2)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24년 수입계획				2024년 지출계획			
항 목	당초 수입액	변경 수입액	증 감	항 목	당초 지출액	변경 지출액	증 감
합 계	32,381	70,229	37,848	합 계	32,381	70,229	37,848
전입금	-	-	-	비용자성사업비	-	-	-
보조금	-	-	-	융자성사업비	-	-	-
차입금	-	-	-	인력운영비	-	-	-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-	-	-	기본경비	-	-	-
예탁금 원금회수	-	-	-	예탁금	-	-	-
예치금회수	12,064	49,912	37,848	예치금	32,381	70,229	37,848
예수금	-	-	-	차입금원리금 상환	-	-	-
이자수입	317	317	-	예수금원리금 상환	-	-	-
기타수입	20,000	20,000	-	기타지출	-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1조
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생략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장 고 영 룡